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83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 의 자 : 남인순 · 조계원 · 송재봉
전진숙 · 김현정 · 이수진
윤종균 · 김남희 · 서영석
모경중 · 김예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사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정신질환자 등의 일상생활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보호사의 직무 필요성과 보호사 직무의 인권적 관련성을 고려한 보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86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보호사의 등록 등)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정신질환자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하 “보호사”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입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입교육 및 직무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보호사 업무의 범위, 신입교육 및 직무교육의 내용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사 등록 방법·절차, 신입교육 및 직무교육의 방법·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제1호의4를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호사의 업무를 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보호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보호사의 신입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보호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입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보호사의 등록 등) ①</u> <u>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정신질</u> <u>환자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u> <u>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u> <u>하는 사람(이하 “보호사”라 한</u> <u>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u> <u>록하여야 한다.</u> <u>② 보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u> <u>실시하는 신입교육 및 직무교</u> <u>육을 받아야 한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u> <u>따른 신입교육 및 직무교육을</u> <u>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u> <u>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u> <u>위탁할 수 있다.</u>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사가</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u> <u>소하여야 한다.</u> <u>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게 된 경우</u> <u>2.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u>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3. (생략) <u><신설></u> 1의4. (생략) 2. ~ 11. (생략)	<u>않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u> ⑤ <u>그 밖에 보호사 업무의 범위,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사 등록 방법·절차,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의 방법·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86조(벌칙) -----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u>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호사의 업무를 한 사람</u> 1의5. (현행 제1호의4와 같음) 2. ~ 11. (현행과 같음)
--	---